

보증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의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60일
신청기관	상호명			
	성명(대표자)		전화번호	
	소재지			

「방위사업법」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방위사업청장 귀하

신청인	1. 「방위사업법 시행령」 제5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	수수료 없음
첨부서류	2. 보증기금의 보증범위, 보증계약의 내용, 보증의 한도 및 보증수수료 등 보증규정에 관한 서류 1부	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처리절차

신 청

→

접 수 · 심 사

→

심사결과 통보

신청인

방위사업청
(보증기관 지정 담당부서)